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.

발 의 자 : 이성만 · 이형석 · 박찬대
강득구 · 문진석 · 민병덕
박 정 · 오영환 · 김홍걸
이동주 · 허종식 · 한정애
김정호 · 이해식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(糖)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.

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(added sugar)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,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,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).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당 함량 비교표시) ① 식품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

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당(糖) 함량 비교표시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첨가당의 포함 여부 및 함량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당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당 함량 비교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·포장·보관·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·포장·보관·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당 함량 비교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② · ③ (생략)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

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

적으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

입·포장·보관·진열 또는

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